

의안번호	2205614
의 퇴 인	이만희의원
회 답 일	2024. 12. 17.
추 계 번호	24B5134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5,000만원, 2030년 1억 2,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억 3,700만원(연평균 1억 8,7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39조)	350	250	85	124	128	937	1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출연 또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6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됨 1. 거출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재량규정
3	안 제12조(자조금 운용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u>보고서</u> 를 받은 경우에는 <u>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u>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32조에 따른 개선 등 조치명령,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5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u>농업인등 현황을 포함한 통계자료</u> (이하 “통계등”이라 함)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u>자조금단체</u> 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해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u>농어업경영정보</u>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들의 <u>개인정보</u>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주소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정 등)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u>자조금통합지원센터</u> (이하 “지원센터”이라 함)을 <u>지정</u> 할 수 있음(제1항)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지원센터</u> 의 운영에 <u>필요한 경비</u> 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u>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u>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u> 을 <u>구축</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안 제40조(지도·감독)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함)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u>소속 공무원</u> 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u>검사</u>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이라 함)로부터 농산자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출연 또는 지원)	—	<국가의 출연금>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지원(3031-325) 중 ‘자조금지원(단체)’ 사업을 통해 자조금 지원 중이며, 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자조금지원 사업 예산 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자조금지원(3031-325)</td><td>12,420</td><td>13,110</td><td>13,110</td><td>13,110</td></tr><tr><td>— 자조금지원(단체)</td><td>11,400</td><td>12,090</td><td>12,090</td><td>12,110</td></tr><tr><td>— 자조금지원(행정경비)</td><td>20</td><td>20</td><td>20</td><td>—</td></tr><tr><td>—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지원센터)</td><td>1,000</td><td>1,000</td><td>1,000</td><td>1,000</td></tr></table>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자조금지원(3031-325)	12,420	13,110	13,110	13,110	— 자조금지원(단체)	11,400	12,090	12,090	12,110	— 자조금지원(행정경비)	20	20	20	—	—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지원센터)	1,000	1,000	1,000	1,000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자조금지원(3031-325)	12,420	13,110	13,110	13,110																								
— 자조금지원(단체)	11,400	12,090	12,090	12,110																								
— 자조금지원(행정경비)	20	20	20	—																								
—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지원센터)	1,000	1,000	1,000	1,000																								
2	안 제6조(자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 또는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향후 지방자치단체 수, 지원대상 자조금 단체 및 그 규모 등을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12조(자조금 운용 평가)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지원센터) 예산을 통해 수행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4	안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관 정보처리시스템 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5	안 제37조(농어업경영 정보 등의 이용)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보유하는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38조(자조금통합 지원센터 지정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치 지원, 단체 담당자 직무교육, 통합콜센터 운영, 홍보 등 자조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조금단체 지도·감독, 점검 등 추진 예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자조금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자조금지원(3031-325)</td><td>12,420</td><td>13,110</td><td>13,110</td><td>13,110</td></tr><tr><td>－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 지원센터)</td><td>1,000</td><td>1,000</td><td>1,000</td><td>1,000</td></tr></table>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자조금지원(3031-325)	12,420	13,110	13,110	13,110	－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 지원센터)	1,000	1,000	1,000	1,000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자조금지원(3031-325)	12,420	13,110	13,110	13,110														
－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 지원센터)	1,000	1,000	1,000	1,000														
8	안 제40조(지도·감독)																	
7	안 제39조(자조금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조금 개요

- 자조금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단체에 자조금 지원중

- (법적 근거) 「농수산물자조금법」 제5조¹⁾
- (농산물자조금 단체) 30개 단체²⁾ ('24년 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18개 단체(사과, 감귤, 파프리카 등)
 - (임의자조금단체) 12개 단체(가지, 오이, 블루베리, 밤 등)
- ※ [참고자료 1] 품목별 농산물자조금단체 현황,
[참고자료 2] 품목별 자조금 지원 현황 참고

[표 2] 농산물자조금 지원 사업 예산 현황: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지원형태 및 보조율(%)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자조금지원 (3031-325)						
- 자조금지원(단체)	보조 (국비 50%, 자부담 50%)	품목별 자조금 단체 운영비 지원	11,400	12,090	12,090	12,110
- 자조금지원(행정 경비)	보조 (국비 100%)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 사업점검 등 비용 지원	20	20	20	-
- 자조금지원(자조금통합지원센터)	보조 (국비 100%)	자조금 교육·홍보, 의무자조금 전환·설치, 콜센터 운영 등 자조금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	1,000	1,000	1,000	1,000
합계			12,420	13,110	13,110	13,1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8.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자조금법」”이라 함)로부터 농산물자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목적) 농산물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
 - (농산물자조금)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기금
 - (자조금단체)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 등이 농산물자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나.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39조)

□ 본 추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조금통합지원시스템 연차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추계([표 3]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2년간 개발할 예정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외에도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보안관리 체계구축 비용은 지속 소요된다는 의견

[표 3] 자조금통합지원시스템 연차별 산출내역서

(단위: 백만원)

이행과제/세부이행과제		유형	연도별 구축·운영		
			1년차	2년차	3년차
공통: PMO(프로젝트 관리조직), 감리		개발비	20	10	
1. 자조금 포털서비스 구축(홈페이지)	○ 홈페이지 기능별 메뉴 기획 및 개발, 디자인 작업 등	개발비	60		
2. 자조금 업무시스템 확대 및 개편	○ 자조금 거출시스템 및 증명발급 시스템	개발비	90	60	
	○ 자조금단체 평가시스템		15		
	○ 생산·유통 자율조절 관리시스템		15	15	
	○ 자조금 통합 사무국 ERP		60	30	
	○ 자조금단체 사업 운영 관리 및 예산관리 시스템		20	15	
	소계		200	120	

이행과제/세부이행과제		유형	연도별 구축·운영		
			1년차	2년차	3년차
3. 관리시스템 (admin) 구축	○ 관리기관 운영페이지 메뉴 기획 및 개발, 디자인 작업 등	개발비	40		
4. 자조금 포털 서비스 IT 인프라 및 보안 관리 체계 구축	○ 국가정보원 보안지침, 개발보안지침을 준수 및 시큐어코딩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접근성, 보안 등 각종 지침을 준수 / 반응형 웹 개발을 통한 모바일기기 사용자 지원	개발비	20	10	10
5. 클라우드 통합 인프라 구축	○ 클라우드 개발/운영 환경 구성	개발비	10	10	20
6. 기능개선 및 고도화	○ 완전유지관리(기능개선업무): 기능추가, 변경, 삭제 등	개발비		100	
7. 유지관리비	○ 적응, 수리, 예방, 서버유지관리 (비기능개선업무) ○ 지원업무 ○ 일상운영 등	유지관리비	150	150	150
합계			500	400	18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따라서 시스템 구축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 (시스템 구축비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에 따라 개발비 (누적)의 15%로 산출³⁾
 -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1차 구축(2026년)이 완료된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⁴⁾
 -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3)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판)」, 2024.5. 173쪽)

4)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4.5.)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9억 3,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내용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개발비	공통: PMO(프로젝트 관리조직), 감리	20	10	—	—	—	30
	자조금 포털서비스 구축	60	—	—	—	—	60
	자조금 업무시스템 확대 및 개편	200	120	—	—	—	320
	관리시스템(admin) 구축	40	—	—	—	—	40
	자조금 포털 서비스 IT 인프라 및 보안 관리 체계 구축	20	10	10	10	10	60
	클라우드 통합 인프라 구축	10	10	20	20	20	80
	기능개선 및 고도화	—	100	—	—	—	100
	소계(A)	350	250	30	30	30	690
유지관리비(B)		—	—	55	94	98	247
합계(C=A+B)		350	250	85	124	128	93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전체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품목별 농산자조금단체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24년 기준: 농산자조금 30개 품목(의무 18, 임의 12)

※ 음영: 국비지원 대상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전환)	자조금 거출기준·방법
의무 (18)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014 (‘15.5.14.)	· (농가) 2,400원/a · (검사업체) 300~900원/kg · (인삼농협) 120원/a · 경작신고 시 농협 거출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 협회	2015 (‘16.7.1.)	· 인증면적 기준 3~5원/m ² · 인증확정시 인증기관 거출 · 미납자 고지서 발부(연1회)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 중앙연합회	2009 (‘17.1.1.)	· 재배면적(m ²)당 400원, 공판장 출하액의 2%, 수출 본당 30원 · 고지서 발부(5, 8월)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006 (‘17.2.15.)	· (농가) 재배면적(m ²)당 30원 · (회원단체) 취급액의 0.3% 이내 · 단체에 거출안내 공문 송부(연 3회 이상)
	배	(사)한국배연합회	2010 (‘17.7.6.)	· 배봉지 1매당 2원 · 봉지비에 포함, 전산 자동 수납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 산자조회	2000 (‘17.7.14.)	· 재배면적(m ²)당 303.1원 · 고지서 발부(1, 7월)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010 (‘17.7.21.)	· (농가) 재배면적(3.3m ²)당 20원 · (농협) 직전년도 취급액 차등부과(2~20백 만원) · 고지서 발부(1, 4, 7, 10월)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008 (‘17.9.29.)	· 출하대금의 0.25% · 대금정산 시 농협 거출, 자진신고 및 납부고 지서를 통한 납부
	콩나물	(사)대한두채협회	1994 (‘17.11.30.)	· 콩나물콩 사용 1kg당 10원 · 고지서 발부(매월 말일)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 협의회	2006 (‘18.11.8.)	· (농가) 박스(10kg)당 20원또는 재배면적(m ²) 당 30원 · (농협) 전년취급액기준 2~15백만원 * 박스 미사용시 판매대금에서 공제(1kg당 2원) · 박스비에 포함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 협의회	2019 (‘19.9.18.)	· 공판장 경매액의 0.75%, 계통출하 판매액의 0.75%, 공판장 미출하시 품목별 차등 적용 · 대금정산 시 aT, 농협 거출, 고지서 발부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010 (‘19.12.30.)	· (농가) 10원/m ² 이내(최고한도 20만원) · (농협) 전년도취급액의 0.07% 이내(최고한 도 1천만원) · 고지서 발부(6, 8, 11월)

구분	품목	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전환)	자조금 거출기준·방법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010 (‘20.7.24.)	·(농가) 1㎡당 5원 * 구간별 거출: ~2천㎡(1만원), 2~3천㎡(1.5만원), 3~4천㎡(2만원), 구간별 5천원씩 상향 ·(농협)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차등 부과(1~6백만원)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010 (‘20.7.24.)	·(농가) 1㎡당 4원(최고한도 20만원) ·(농협) 전년도 취급액에 따라 차등 부과(1~6백만원)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2018 (‘21.12.22.)	·(농가) 10원/㎡(생산자단체) 취급액의 0.1%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2008 (‘21.12.28.)	·출하(판매)액의 0.05%
	차	(사)한국차자조회	2003 (‘22.7.11.)	·(대상) 재배면적 1,000㎡ 이상 차 경작자 ·(기준) 재배면적(㎡)당 20원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2003 (‘22.8.22.)	·(대상) 재배면적 1,000㎡ 이상 자생란 재배 농가 및 법인 ·(기준) 재배분수 500분이하 200천원, 공판장 경매가 0.5~1%, 전시판매액의 1~3%
임의 (12)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2005	·전년도 출하액의 0.1% 이내 (회원농협별 100~500만원)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2008	·전년도 출하액의 0.01% 이내 (회원농협별 100~400만원)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2012	·전년도 출하액의 0.04% 이내 (회원농협별 100~400만원)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2017 (21 임의신규)	·재배면적(㎡)당 30.3원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2002 (22 임의신규)	재배면적(㎡)당 5원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2009	·출하(판매)액의 0.14% 이내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협회	2010	·판매량의 3% 이내(150~540만원)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2010	·전년도 판매실적의 1% (최소 50만원~최대 500만원)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2006	·출하액의 0.08%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2010	·40kg 가마당 150원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연협회	2001 (24 임의신규)	·재배면적(㎡)당 20원
	논콩	(사)한국논콩자조회	2024 (24 임의신규)	·재배면적(㎡)당 5원

※ 음영: 국비지원 대상

[참고자료 2] 품목별 자조금 지원 현황: 2022~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22년

(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명	최종 배정액
의무 (16)	인삼	868
	친환경	1,372
	백합	557
	키위	175
	배	766
	파프리카	1,198
	사과	1,669
	감귤	1,132
	콩나물	122
	참외	355
	절화	520
	포도	500
	마늘	995
	양파	603
	뽕은감	200
	복숭아	400
임의 (4)	가지	62
	오이	72
	풋고추	72
	블루베리	62
합계		11,700

□ 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명	최종 배정액
의무 (18)	인삼	984
	친환경	1,358
	백합	598
	키위	171
	배	719
	파프리카	1,130
	사과	1,594
	감귤	1,289
	콩나물	157
	참외	379
	절화	515
	포도	455
	마늘	995
	양파	536
	뽕은감	295
	복숭아	480
	차	100
	자생란	227
임의(2)	블루베리	70
	밤	58
합계		12,110

□ 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명	최종 배정액
의무 (18)	인삼	700
	친환경	1,537
	백합	563
	키위	180
	배	746
	파프리카	1,115
	사과	1,533
	감귤	1,261
	콩나물	104
	참외	342
	절화	692
	포도	505
	마늘	995
	양파	570
	뽕은감	210
	복숭아	435
	차	80
	자생란	287
임의 (3)	블루베리	160
	밤	60
	버섯	15
합계		12,090